

 <p>거창군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>공 보</h1> <p>제966호 2024. 5. 29.(수)</p>	
---	---	---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24-68호	도로명주소 고시	2
거창군 고시 제2024-69호	도로구간 변경 고시	3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24-824호	「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	6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회 램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☎055-940-3043)
 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5. 29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161 등 5개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(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)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5월 29일

거 창 군 수

1. 고시일자 : 2024. 5. 29.

2. 고시방법 : 거창군보, 거창군 홈페이지, 게시판
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/ [붙임]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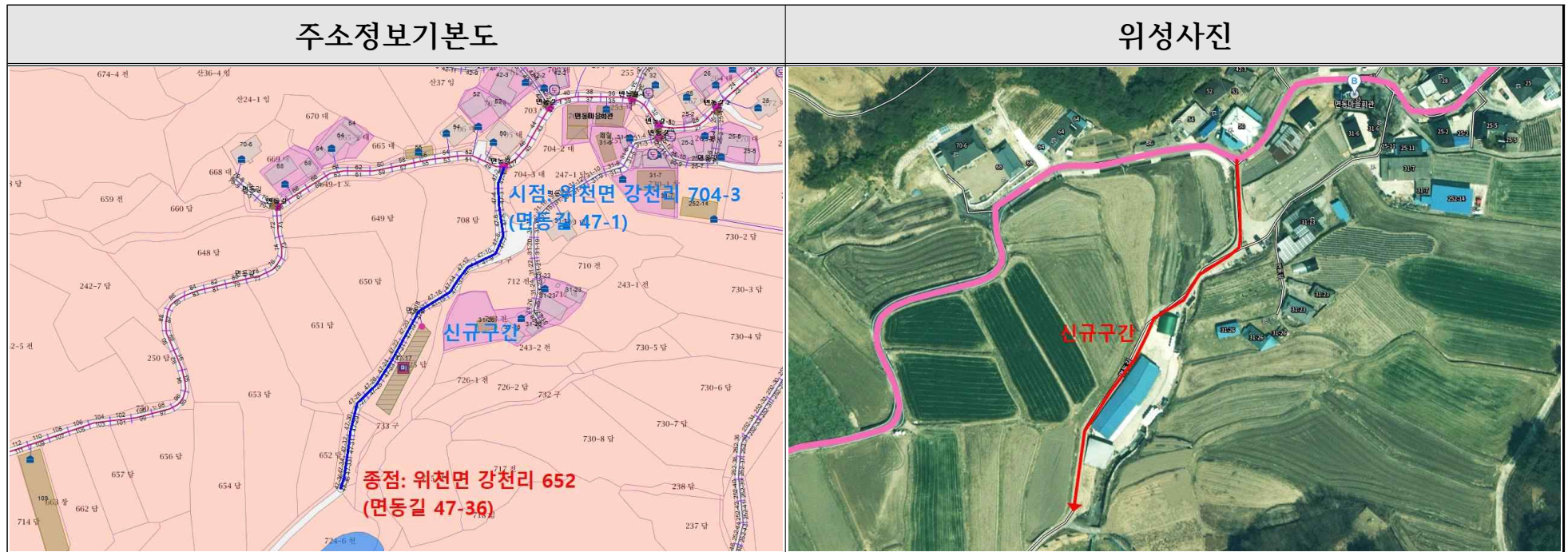
※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

4.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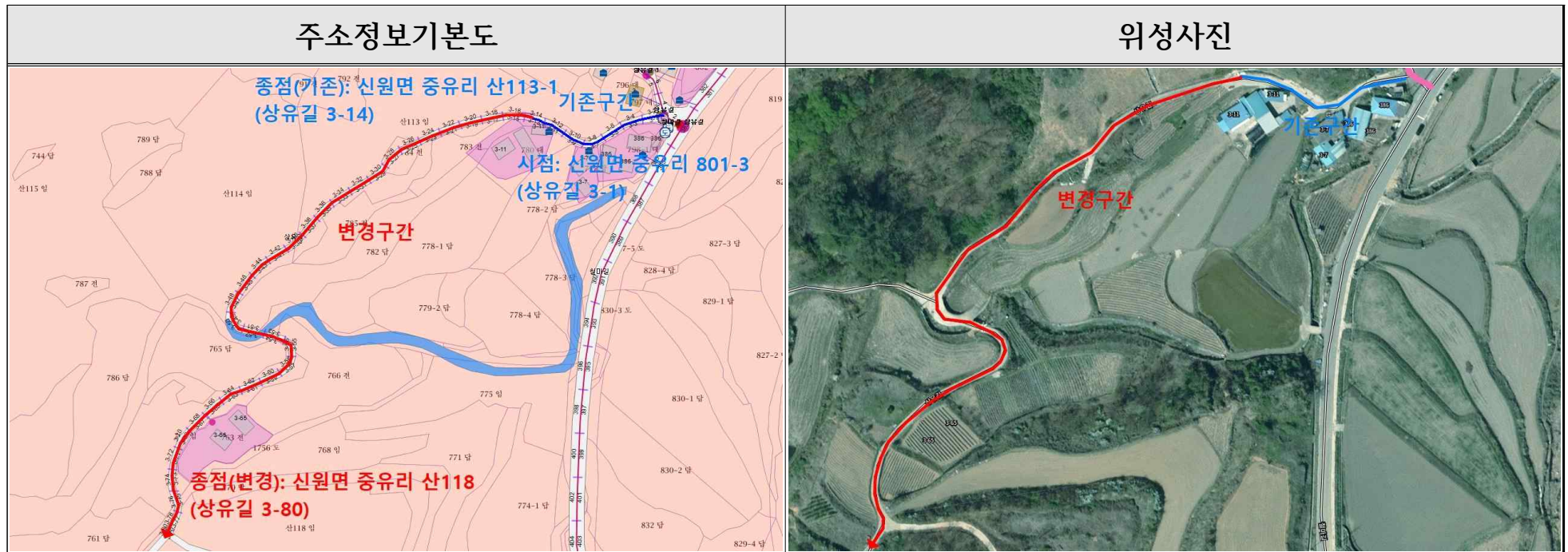
- 도로구간의 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4년 5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도로구간 변경 조서

일련 번호	행정 구역	구 분	도로명	도로구간		중양선	건물 번호	사물 주소	도로구간 변경 사유	비 고
				시작지점	끝지점					
1	위천면	변경 전	면동길	위천면 강천리 704-3 (면동길 47)	-	도면참조	0	없음	종속구간 변경(생성)	직권
		변경 후	면동길	위천면 강천리 704-3 (면동길 47-1)	위천면 강천리 652 (면동길 47-36)	도면참조				



일련 번호	행정 구역	구 분	도로명	도로구간		중양선	건물 번호	사물 주소	도로구간 변경 사유	비 고
				시작지점	끝지점					
2	신원면	변경 전	상유길	신원면 증유리 801-3 (상유길 3-1)	신원면 증유리 산113-1 (상유길 3-14)	도면참조	2	없음	종속구간 변경(연장)	직권
		변경 후	상유길	신원면 증유리 801-3 (상유길 3-1)	신원면 증유리 산118 (상유길 3-80)	도면참조				



「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5월 29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, 이장의 고령화 및 임기 등 현 실태에 맞게 이장자녀 장학생의 선발조건을 확대·완화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학생의 자격기준 확대(안 제1조)
 - 근속기간 삭제
 - (현행) 2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
 - (개정) 이장의 자녀

4. 일부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29. ~ 6. 19.

6. 의견제출 :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연락처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(구술), 팩스, 직접 방문 등

1) 주 소 : (우50132)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거창군청 행정과

2) 전화번호 : 055-940-3184

3) F A X : 055-940-3169

붙임 1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「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3. 관련법령 1부. 끝.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거창군 조례 제 호

「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

「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”을 “품행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
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이장자녀 장학금 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2년 이상 근속하고</u>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이장 (이하 “이장”이라 한다)일 것 2. 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,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것 	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이장자녀 장학금 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현재 재직 중이고</u>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이장 (이하 “이장”이라 한다)일 것 2. 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,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것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- 차.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- 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[시행 2023. 12. 14.] [대통령령 제33966호, 2023. 12. 14., 일부개정]

- 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**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- 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□ 「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

[시행 2021. 9. 29.] [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66호, 2021. 9. 29., 전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이장자녀 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

1.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이장(이하 “이장”이라 한다)일 것
2. 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,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것

제3조(추천) 읍·면의 장(이하 “읍면장”이라 한다)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

제4조(선발)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

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 인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.

1. 중학생·고등학생·대학생 수
2. 학교 간
3. 읍·면 간
4. 이장 한 명당 선발 자녀 수

제5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연간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.

제6조(장학금액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중학생: 연 20만원 이내
2. 고등학생: 연 50만원 이내
3. 대학생: 연 100만원 이내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.

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.

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
2. 장학생이 퇴학·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했을 때
3.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.